

『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조례상 자활기금의 운용 용도를 보다 세분화하고 지원대상에 자활근로사업단을 추가하여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활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기금의 지원대상에 자활근로사업단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 추가
(안 제4조, 제5조, 제8조, 제10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,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자활기금 지원대상을 기존 자활기업에서 자활근로사업단 및 시장 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으로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자활·자립을 지원하고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임.

○ 검토 결과,

- 현 조례상 자활기금 지원대상은 자활기업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다양한 자활지원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, 저소득층 자활·자립의 체계적 지원과 지속적인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.
-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는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 안내지침에 근거하고 있으며, 자활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·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상정된 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